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68호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7일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개정이유

하이브리드자동차와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면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지역개발채권의 등록, 매출 및 상환사무의 위탁대상을 대전광역시 금고로 명확히 함(안 제16조).
- 나.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지역개발채 권 매입 면제기한(2018년 12월 31일)을 삭제하고, 전기자동차를 지역 개발채권 매입 면제대상에 추가함(안 별표2).

3. 의견제출

-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1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 행정 자치수석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실) (전화 042-270-5124, FAX 042-270-5029, E-mail : pil6969@korea.kr)
-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개정 조례안 : 붙임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대전광역시 금고"로 한다. 별표 2 제2호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동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등록하는 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의무 감면
 - 1) 지역개발채권 매입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역개발채권 매입금액을 전액 면제
 - 2) 지역개발채권 매입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한 지역 개발채권 매입금액에서 150만원을 감면

부칙

이 조례는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전 행 제16조(채권업무의 위탁관리) 채권의 발행 및 관리는 시장이 관장하되, 채권의 등록,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에 관한 시무는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별표 2] 채권매입 면제대상(제9조 관련) 매입 면제대상 및 내용 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등록하는 자가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경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세 감면시한까지 150만원(매입하여야하는지역개발채권의 매입금액이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에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의무면제	제16조(채권업무의 위탁관리)

매입 면제대상 및 내용

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 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동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기제 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등록하는 자가 지역 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 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 역개발채권의 매입의무 감면 1) 지역개발채권 매입금액이 1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역개발채권

- 매입금액을 전액 면제
- 2) 지역개발채권 매입금액이 1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한 지 역개발채권 매입금액에서 150만원 을 감면

관계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자동차(기계장비를 포함한다. 이하이 항에서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제작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반납한 자동차등과 같은 종류의 자동차등(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같은 종류의 자동차를 말한다)으로 교환받는 자동차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면제한다. 다만,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동차등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등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 ②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 항제8호에 따라 말소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다시 등록하기 위한 등 록면허세는 면제한다.
 - ③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 1.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 2.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산출한 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한다.
 -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 1.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 2.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한 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또는 클린디젤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렁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 (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 4. "태양광자동차"란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 5. "하이브리드자동차"란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 또는 산업 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 6. "연료전지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 7. "천연가스자동차"란 천연가스(압축천연가스 및 액화천연가스를 포함한다)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 8. "클린디젤자동차"란 경유의 연소가 기관의 내부에서 이루어져 열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는 기관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을 하이브리드자동차

나 천연가스자동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9.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연료전지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